

문서번호	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-6248
보존기간	10년
결재일자	2018.06.07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	문화체육본부장	
김흥기	최유철	박정우	06/07 황영찬	
협 조	과장	최철웅		

『장충체육관 주차요금정산기 IC카드리더기 교체』 시행 계획(안)

2018. 6

『주차요금정산기 IC카드리더기 교체』 시행 계획(안)

장충체육관에 설치된 주차요금정산기의 신용카드 리더기를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 정한 규격의 IC카드리더기로 교체하여,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설 주차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 개요

□ 현실태

- 주차정산기의 신용카드 단말기는 금융위원회 미등록 제품 사용 (2대)
- 2018년 7월 20일 이후 기존 미등록 단말기 사용불가

□ 추진목적
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3항 준수

제19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·이용하여야 한다.

※ 부칙 제4조<법률 제13068호, 2015.1.20.(시행일:2015.7.20.)>에 따라
기존 가맹점은 3년의 유예

위반 시, 제72조(과태료) ① 5. 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□ 신용카드리더기 교체대상

- 장충체육관 무인정산기 : 2대(출구 1, 사전무인 1)

구 분	규 격	수 량	설 치 장 소
출구무인	DY-APS200C	1	주차장출구
사전무인	DY-APS200C	1	체육관실내

II 추진 계획

○ 계약방법 : 구매설치 수의계약 (주)동양산전

※ 수의계약사유

[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]

- 바목: 『해당 물품을 제조·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·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』
- 타목: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·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·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

→ 카드리더기는 주차요금정산기의 부속품으로 주차시스템과 연동되는 사항으로 타 업체는 부품공급 및 프로그램 수정이 불가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

○ 소요예산: 9,000천원(부가세포함)

○ 예산과목: 장충체육관,대행사업비,수선유지비,수선유지비(기타수선유지비)

○ 설치일정: 2018년 06월 중 (설치일정 조율중)

구 분	소요일수	비 고
발주 및 계약	7일	총무처
설치 및 준공/검사	30일	설치 1일 소요(7.20전 완료)

. 끝 .